

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



2026년 4월 29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71 호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중 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② 이 규정은 직원에 한하여 적용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. 5. 1.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 장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4 1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범위)</p> <p>② 이 규정은 직원에 한하여 <u>적용</u>되며 <u>직원이외의 업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2조(적용범위)</p> <p>② 이 규정은 직원에 한하여 <u>적용</u>한다.</p>